친권자(후견인)동의서

한국장학재단 귀중

본인(친권자 또는 후견인)은 채무자 (학생성명: ,학생주민등록번호:)이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함)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 단(이하 "재단")과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(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)를 체결할 경우 채무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약정 체결하는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(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)를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, 개인(신용)정보 제공·활용 및 조회 동의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.

본인은 상기 채무자의 친권자(후견인)로서 채무자가 귀 재단과 년 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를 거래함에 있어 아래의 행위를 함에 대해 동의합니다.

아 라

- 1. 귀 재단과의 학자금대출거래약정(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) 및 기타 학자금 대출거래와 관련 하여 채무자가 행하는 약정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 및 모든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
- 2. 귀 재단과의 학자금대출거래약정(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)와 관련한 채무자의 개인(신용)정보 제공·활용 및 조회 동의에 관한 사항

2010 년 월 일

친권자(부)	성 명	(서명, 인)	주민등록번호	-
(후견인)	주 소		전화번호	
친권자(모)	성 명	(인)	주민등록번호	-
(후견인)	주 소		전화번호	

(주의) <u>인감은 인감증명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, 불일치시에는 본 약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</u>